

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6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6. 1. 08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·재해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도시사업 중 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5조제7호)

○ 세계보건기구(WHO) 안전도시 인증 공인 기간 만료('15. 3월)

나.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함(안 제5조의2)

○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'16년도 예산 25,000천원 확보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'15. 12. 23. ~ '16. 1. 12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군민안전보험)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이름, 보상범위, 보상 한도액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업의 범위)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.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.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.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.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.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.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권장하는 <u>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</u> 8.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----- 2.----- 3.----- 4.----- 5.----- 6.----- <p><u><삭 제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.----- <p><u>제5조의2(군민안전보험) ①</u>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군민안전보험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</u>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0일 이내에 <u>보험가입 회사이름, 보상범위,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

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5조의2(군민안전보험)제1항

: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,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

4. 작성자

안전총괄과장 김 정 욱